# 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 규정

- 제 1 조 (명칭) 본 연구비의 명칭은 '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'라고 칭한다.
- 제 2 조 (목적) 본 규정은 부정맥 연구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자격) 대한부정맥학회 전문회원으로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 4 조 (재원) 학술연구비는 대한부정맥학회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임원회의 에서 결정한다.
- 제 5 조 (추천)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병원 부정맥분야의 선임 교수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소속 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제 6 조 (신청) 연구책임자는 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신청서 1부 (소정 양식)
  - 2. 추천서 1부
  - 3. 이력서 1부 (명함판 사진 부착)
  - 4. 연구 업적 목록 1부 (최근 5년간 연구 업적만 기록)
  - 5. 연구 계획서 1부 (실행예산계획서 포함, 연구비 운영 지침 참조)
- 제 7 조 (심사) 연구 과제의 심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제 8 조 (지급) 지급이 결정된 연구 과제는 해당 년도의 대한부정맥학회 총회 석상에서 발표한다.
- 제 9 조 (의무)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대한부정맥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, 연구기간 이 종료하고 1년 이내에 대한부정맥학회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한 연구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부정맥학회지에 게재하고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종결보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국문: 본 연구는 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 졌음(연구비 번호).

영문: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n Heart Rhythm Society(grant number).

제 10 조 (부칙)

- 1. 본 규정은 대한부정맥학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 연구비 관리는 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 운영지침에 따른다.

- 3. 연구비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 연구비를 회수한다.
- 4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## 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 운영지침

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(이하 '연구비'라 한다)의 지원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위원회)

- (1) 연구비의 배정과 운용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- (2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3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임원회의에 상정한다.
  - ① 연구비 지원 계획
  - ②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
  - ③ 연구비의 배정
  - ④ 연구 결과의 평가
  - ⑤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의무 미이행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분
  - ⑥ 기타 연구비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

#### 제 3 조 (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)

- (1) 연구비의 지원은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(2)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은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임원회의는 학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.
- (3) 선정된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연구비 지원 과제의 연구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 조건에 따라 연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다기관 공동 연구는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.

#### 제 4 조 (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절차 및 기준)

- (1) 연구비 지원과제는 각 연구계획서마다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- (2) 연구위원회는 연구 심사위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.
- (3)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비의 감액 조정 등 연구계획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.
- (4)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.
  - ①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
  - ② 연구진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업적
  - ③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
  -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

- ⑤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
- ⑥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
- ⑦ 대한부정맥학회로부터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력
- 제 5 조 (연구의 구분) 연구비 지원 과제는 연구 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다기관 공동연구와 단독연 구로 구분한다.

### 제 6 조 (연구비 신청 자격)

- (1)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대한부정맥학회 전문회원이어야 한다.
- (2) 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,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.
- (3) 동일인이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상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. 다만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.
- (4)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를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야 연구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.
- (5) 연구비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한 연구기관에서 1년에 2과제까지만 연구비를 수혜할 수 있다.
- (6)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를 제 8조에 정한 기한 내에 발표하지 않았거나 학술지 게 재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비 지원을 제한한다.

### 제 7 조 (연구비 세부 항목 및 기준)

- (1) 단독 및 공동연구의 연구비는 연구 활동비, 보조 연구원 수당, 회의비, 여비, 도서구입비, 전산 처리비, 인쇄비, 공과금 및 제 잡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다.
- (2) 연구비 중 연구 활동비 및 보조연구원 수당의 합계는 단독연구비는 30%, 다기관 공동 연구는 연구비 총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단 연구 수행 과제의 성격상 특별히 인 정되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비중을 조정 할 수 있다.
- (3) 보조연구원 수당, 회의비, 여비 및 연구위원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소액의 세부항목 예산의 지출 증빙서류는 연구 책임자의 지불확인서로써 영수증에 대신할 수 있다.

#### 제 8 조 (연구보고서 제출 및 학술지 발표)

- (1)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(2)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고,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(3) 연구 책임자는 연구 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부정맥학회 학술대회에 서 발표하여야 하며, 부정맥학회지에 게재하고 별책 3부와 연구비 운영 지침에 의거 종결보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4) 연구 결과 발표 논문 또는 단행본에 연구비 수혜에 대한 공지의 글을 게재하여야 한다.

#### 제 9 조 (연구계획 변경 및 보고 기한의 연장)

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, 연구내용 또는 제목, 연구진, 실행예산 등 연구 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의 연장을 당초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제 10 조 (연구 중단 시 보고)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해외여행, 사고,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,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)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위원 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비의 반환 (전부 또는 일부)은 연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한다.
  - (1)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  - (2)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  - (3) 연구 지원 신청서, 중간보고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  - (4) 중간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
  - (5)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
  - (6)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 - (7)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를 제 8조에 정한 기한 내에 발표하지 않았거나 학술지 게 재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 - (8)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 중단을 요청하였을 때

### 제 12 조 (연구비의 집행 관리)

- ① 연구비의 집행,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각 기관의 위탁계약에 따른다.
- ② 연구비 관리 중 발생한 환차액 등 금액의 변화는 연구 활동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한부정맥학회에서 관리한다.
- ③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대표자가 대한부정맥학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④ 연구비는 책임 연구자가 속한 기관 가운데 책임 연구자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지급한다.

## <별표 1>

## 연구비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(다기관 공동연구)

지 출 항 목	내용 및 특기사항	산출기준	지급방법	증빙서류
I. 연구책임자 연		월 15 만원 이내		영수증 또는 지불확인서
공동연구원	. 1 인당 연구책임자의 80% 이내	월 12 만원 이내		~
	.1인당 보조연구원 수당	실 경 비		~
III. 회의비	. 협의회 경비 등	실 경 비	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며,	44
IV. Ф Ш	. 국내 및 국외여비	실 경 비		~
	. 물품구입비, 참고 문헌 구입비,자료 복사비등	실 경 비		영수증(단, 항목총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로 대체 가능)
VI. 전산처리비	.컴퓨터 사용료			영 수 증
VII. 인쇄비, 공과금 및	. 보고서 인쇄비는 논문게재료, 공공요금, 기타 잡비 등 (연구비총액의 10% 범위 내에서 인정)	실 경 비		영 수 증
총 계				

## 연구비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(조사.실험연구)

지 출 항 목	내용 및 특기사항	산출기준	지급방법	증빙서류
1. d 7 # 0 T		81 40 DF01 VIII		영수증 또는
연구책임자		월 10 만원 이내		지불확인서
구 활 공동연구원 당	.1인당 연구책임자의 80% 이내	월 8만원이내	.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합계는 연구비 총액의 30%를 초과할수 없으며 각 해당 기관의 중앙관리 연구비로 결정된 경우는 대한부정맥학회 연구비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며, 대한부정맥학회와	•
	.1인당 보조연구원 수당	월 10 만원 이내		u
	. 연구기기 및 부품 구입비	실 경 비		영 수 증
IV.소모성재료비	. 시약, 소모성 재료등 구입비	실 경 비		•
V. 기자재임차료	. 전산처리비, 연구 기기, 비품임차료	실 경 비	별도계약을 맺은 경우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	-
VI. 참고문헌 및 자료수집비	. 도서구입비, 자료복 사비, 조사경비(여비 제외)등	실 경 비	지급한다.	•
	. 국내 및 국외여비	실경비		영수증 또는
				지불확인서
IX. 인쇄비,	. 협의회 경비 등 . 보고서 인쇄비, 논문 게재료, 공공요금 기타 잡비 등 (연구비총액의 10%	실경비		, 영 수 증
	범위내에서 인정)			
총 계	. 연구활동미 및 도소 연구원 수당의 합계가 연구비 총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			